

2. 주요내용

조례 폐지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근거 : 건국13310-29(2003.6.24)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.
- 다. 입법예고(2003.9.5 ~ 2003.9.24) : 의견없음
- 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따로붙임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3. 11. 4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년 10월 2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3년 10월 30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99회(임시회) 제1차 위원회(2003년 10월 31일) 상정 의결.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계정근)

- 가. 개정이유
 -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출방법 현실화 등을 통한 업무개선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있어 돌발사태에 의한 긴급 복구공사의 경

우에만 공사종료 후에 행하던 것을 다음의 경우에도 포함하도록 하고, 납부 기한을 일정하게 정함(안 제3조 제4항, 제5항)

-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
 - 전기·가스·유류 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
 - 납부기한 : 공사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
 -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신설(안 제3조의2)
 - 굴착원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도의 블록·타일류 구간을 굴착할 경우 간접복구비 산정기준이 되는 간접손괴 영향폭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.6m에서 0.4m로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(안 제3조 제3항 별표1)
 - 원인자부담금 징수 및 복구공사 설계기준의 표준화를 위하여 직접복구 표준단면 중 일반보도블록과 소형고압블록의 모래 포설두께를 표준품셈과 일치하도록 3cm에서 4cm로 변경(안 제3조 제3항 별표2)
 - 차도 노면의 평탄성 향상 및 중복굴착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간접복구비를 면제토록 함(안 제3조 제3항 별표2)
 -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
 - 보도구간에서 굴착폭 외의 잔여 보도폭 합계가 1m미만일 경우, 이 경우 보도폭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며,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때에는 직접손괴부분 복구비 및 직접손괴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 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함.
 -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손괴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 단위로 평상 정비하는 경우
 - 2인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 굴착시 간접손괴 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
 - 사업시행자가 도로 관리청의 도로정비·개축 또는 신설공사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
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
 - 보차도 경계블록(석), 도로경계블록(석), 측구,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괴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
- 다만,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직접복구비를 산정 부과함.
-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(안 제3조 제3항 별표1, 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최태성)

- 2003. 6. 3자로 “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”가 개정 통보되어 우리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부담금 산출방법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
- 원인자부담금 징수절차의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, 차도 노면의 평탄성 향상 및 중복굴착 방지 등을 위하여 간접복구비 면제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“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”가 개정됨으로 인한 후속 조치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69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10. 22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정이유

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출방법 현실화 등을 통한 업무개선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있어 돌발사태에 의한 긴급 복구공사의 경우에만 공사종료 후에 행하던 것을 다음의 경우에도 포함하도록 하고, 납부 기한을 일정하게 정함(안 제3조제4항, 제5항)
 -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
 - 전기·가스·유류 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
 - 납부기한 : 공사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
- 나.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신설함(안 제3조의2)
- 다. 굴착원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도의 블록·타일류 구간을 굴착할 경우 간접복구비 산정기준이 되는 간접손해 영향폭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.6m에서 0.4m로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함(안 별표1)
- 라. 원인자부담금 징수 및 복구공사 설계기준의 표준화를 위하여 직접복구 표준단면 중 일반보도블록과 소형고압블록의 모래 포설두께를 표준폼셈과 일치하도록 3cm에서 4cm로 변경함(안 별표2)
- 마. 차도 노면의 평탄성 향상 및 중복굴착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간접복구비를 면제토록 함(안 별표2)
 -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
 - 보도구간에서 굴착폭 외의 잔여 보도폭 합계가 1m미만일 경우, 이 경우 보도폭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며,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때에는 직접손해부분 복구비 및 직접손해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 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함.
 -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손해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 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
 - 2인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 굴착시 간접손해 영향구간이 증첩되는 경우 감소부분
 - 사업시행자가 도로 관리청의 도로정비·개축 또는 신설공사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
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
 - 보차도 경계블록(석), 도로경계블록(석), 측구,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해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

다만,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직접복구비를 산정 부과함.
- 바.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(안 별표1, 2)
 - 사리도 → 비포장도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도로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, 도로법(제3조, 제78조), 도로법시행령(제1조의3), 지방세법(제27조, 제28조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다. 입법예고(2003. 7. 31 ~ 8.19) : 의견없음
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마로붙임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증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
2. 전기·가스·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
3. 천재·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

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부담금 등의 강제징수) ①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로법 제78조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.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②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2중 보도의 일반보도블록 및 소형고압블록의 적용단면란중 “모래 : 3cm”를 각각 “모래 : 4cm”로 하고, 중별란중 “사리도”를 “비포장도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다만,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·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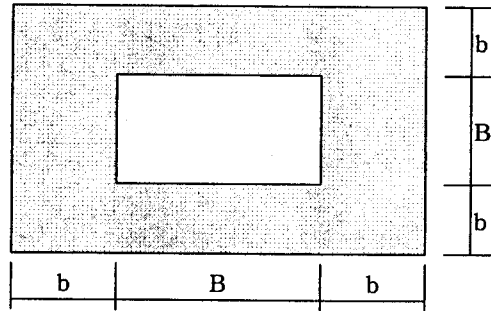
< 별표 1 >

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(제3조제3항 관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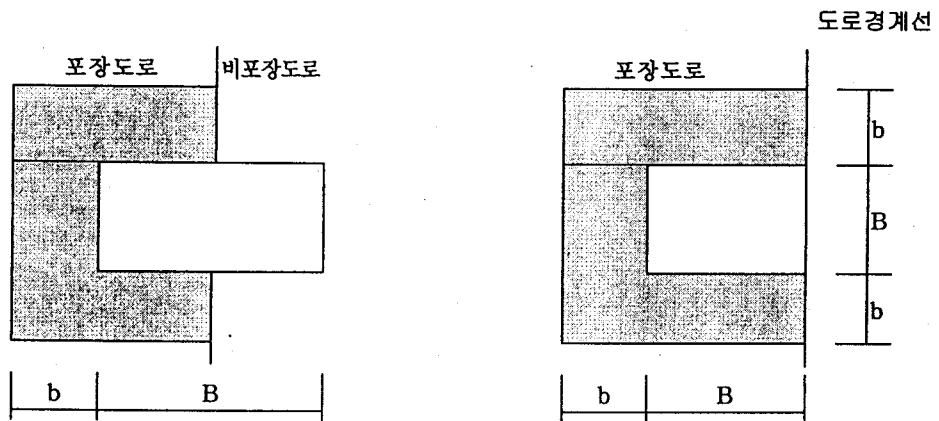
1. 표준 최적구배 - 1 : 0.1(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)
2. 최소굴착면적, 최소굴착폭, 간접손케영향구간 및 복구비용

구 분	차 도 (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)	보 도		
		블록 및 타일류	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, 콘크리트류	
최소굴착면적	0.7m × 0.7m	블록 및 타일류	0.7m × 0.7m	
최소굴착폭	0.7m	0.8m	0.7m	
간접손케영향 구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.25m 구간 · 굴착깊이가 2.5m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.3m 구간 (굴착시 카타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.6m까지의 범위) · 굴착깊이가 2.5m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 이의 1/5까지 범위 (굴착시 파일,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카타기 미사용시는 0.3m씩 추가 가산) · 비포장도로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 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 경계로부터 사방 0.3m 구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.4m 구간 · 보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.25㎡ (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× 1m로 계산한다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 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. · 단,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 경계인접부 굴착의 경우에 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 에 준한다. 	
복 구 비 용	직접	직접손케부분 복구비	직접손케부분 복구비	직접손케부분 복구비
	간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아스팔트포장도로 -손케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-굴착구간 및 손케영향구간의 덧씌우 기(두께 5cm) 비용 · 콘크리트포장도로 -손케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-굴착구간 및 손케영향구간의 아스팔 트 덧씌우기(5cm)비용 ·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(기존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) -손케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 트 표층시공비 -굴착구간 및 손케영향구간의 아스팔 트 덧씌우기(5cm)비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블록류 -굴착구간 및 손케영향 구간의 표층 시공비 (전체 표층용 블록량 의 30%를 새로운 블 록으로 사용하는 것으 로 한다) · 타일류 -손케영향구간의 콘크리 트기초 시공비 -굴착구간 및 손케영향 구간의 표층 시공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손케영향구간의 표층 시공 비 · 굴착구간 및 손케영향구간 의 덧씌우기(4cm)비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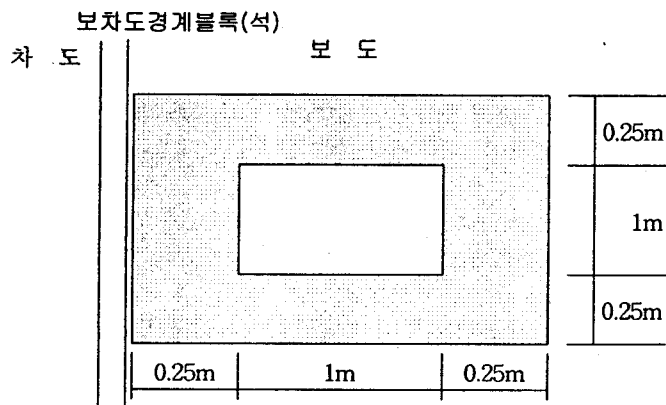
3. 굴착폭(B), 간접손채영향구간(b) 및 간접복구단면
가. 굴착폭(B) 및 간접손채영향(b)



2)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평면도 (아스팔트, 콘크리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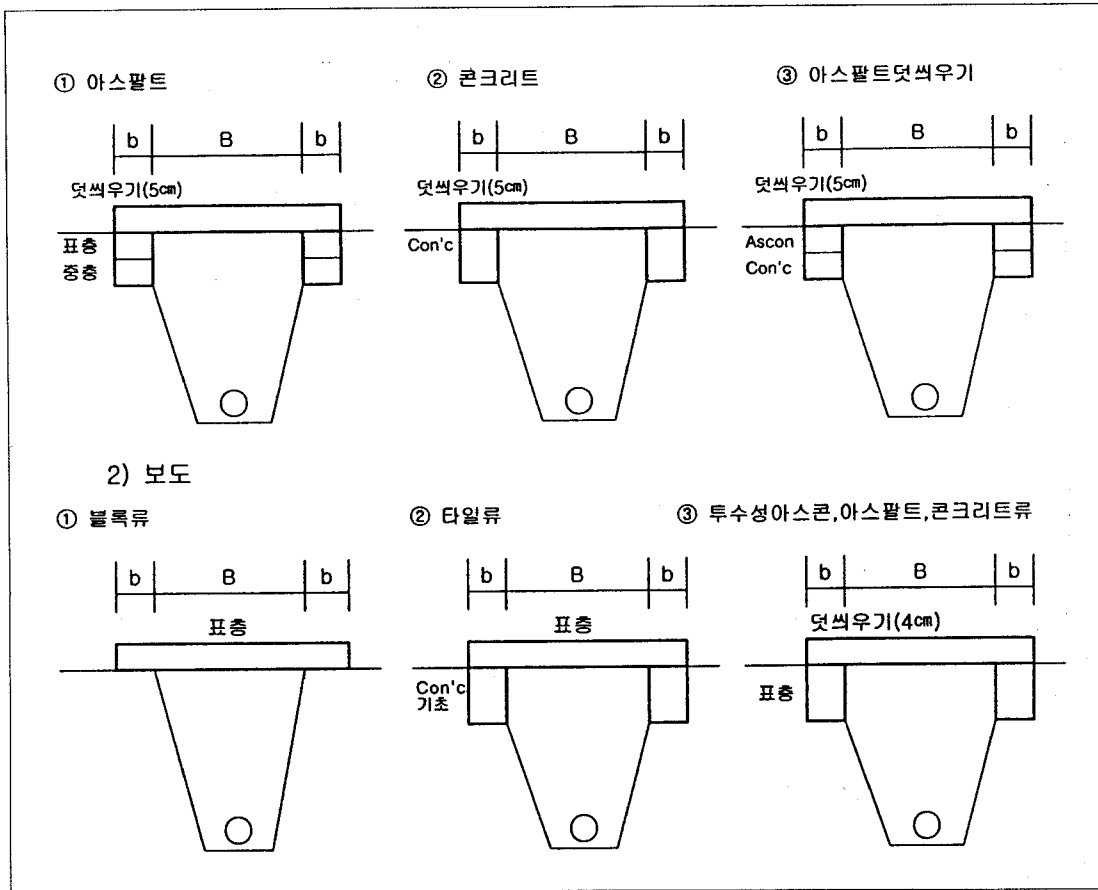


3)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 (보도구간)



나. 간접 복구 단면

1)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



4. 간접 복구비 미부과 대상

- 가.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
- 나. 보도구간에서 굴착폭외의 잔여 보도폭 합계가 1m미만인 경우
 - 이 경우 보도폭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며,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때에는 직접손케부분 복구비 및 직접손케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시공비를 직접 복구비용으로 징수한다.
- 다.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손케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
- 라. 2인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시 간접손케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
- 마.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·개축·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
- 바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
- 사. 보차도경계블록(석), 도로경계블록(석), 측구,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케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
 - 다만,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직접 복구비를 산정 부과한다.

< 별 표 2 >

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(제3조제3항 관련)

종 별	부 호	적 용 단 면	적 용 범 위	
아스팔트 포장도로	A - 1	표 층 : 5cm 중 층 : 15cm 보 조 기 층 : 20cm 기 층 : 40cm	폭 20미터이상 도로	
	A - 2	표 층 : 5cm 중 층 : 7.5cm 보 조 기 층 : 20cm 기 층 : 30cm	폭 20미터미만 도로	
콘크리트 포장도로	C - 1	표 층 : 20cm 보 조 기 층 : 20cm	폭 6m이상 도로	
	C - 2	표 층 : 15cm 보 조 기 층 : 15cm	폭 6m미만 도로	
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	CA - 1	표 층(아스콘) : 5cm 표 층(콘크리트) : 20cm 보 조 기 층 : 20cm	폭 6m이상	기존 노면이 콘크리트포장인 경우
	CA - 2	표 층(아스콘) : 5cm 표 층(콘크리트) : 15cm 보 조 기 층 : 15cm	폭 6m미만 도로	
보 도	일반보도블록	일반보도블록 표층 : 6cm 모 래 : 4cm 보 조 기 층 : 10cm	단,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 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 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.	
	소형고압블록	소형고압블록 표층 : 7cm 모 래 : 4cm 보 조 기 층 : 10cm		
	오나멘트타일	오나멘트타일 표층 : 4.5 cm 물 탈 (1:3) : 3cm 콘 크 리 트 기 초 : 5cm 보 조 기 층 : 10cm		
	투수성아스콘	투수성아스콘 표층 : 4cm 기 층 : 10cm 모 래 : 5cm		
	기 타	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.		
비 포 장 도 로			서울특별시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 도로	
기 타 도 로 시 설 물		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		

비고 : ①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,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②기층·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3조(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) ①~③(생략) ④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관로 시설 등이 불통 파열 누출되거나 기타 돌발 사태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제3조(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) ①~③(현행과 같음) ④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. 전기·가스·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. 천재·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<p>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원인자부담은 당해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제3조의2(부담금등의 강제징수) ①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78조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.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②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